

중국과 대만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between China and Taiwan

하 현 수*
Hyun-Soo Ha

〈목 차〉

- I. 서 론
- II. 대만의 중국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 III. 중국의 대만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 IV. 중국과 대만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V. 결 론

주제어 : 중국 중재제도, 대만 중재제도, 중국과 대만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강사(경제학박사), (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 박사과정 수료

I. 서론

중국과 대만 간 경제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상사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¹⁾ 이에 따라서 양 국가 간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사중재의 중요성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당사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거한 소송 보다는 사적 분쟁해결 방식인 중재를 통해 상사분쟁을 해결하기를 선호하고 있다.²⁾ 즉, 중재판정 패소 당사자가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자발적인 이행을 한다면, 국가는 상사분쟁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 중국과 대만 간의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두 지역 분쟁당사자들이 상사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패소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승소 당사자는 패소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중국과 대만 법원은 중재판정의 집행문제에 개입하게 되며,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중국과 대만은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을 포함한 상호간 상사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접촉을 해왔다. 그러나 기존 대만 정부의 독립노선 추구 등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정치적인 긴장은 이러한 노력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협력은 크게 확대되어 중국과 대만 경제의 상호의존도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두 지역 간의 경제적 통합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중국과 대만은 증가하는 두 지역간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통계에 따르면, 1995년 초부터 2000년 말까지 CIETAC은 200여건이 넘는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 간의 분쟁을 처리하였다. 이중 85% 이상이 대만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³⁾ 최근까지만 해도 양안(兩岸)⁴⁾은 “삼통”(三通)을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간의 무역은 대부

1) 2008년 초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중국과 대만 간 간접무역규모는 1,24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성장하였다. 이중 중국의 對대만 수출은 234.6억 달러, 대만의 對중국 수출은 1,010.2억 달러였다. 양 국가 간 투자와 관련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3,299건의 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실질투자금액은 17.7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2007년 말 기준 대만의 중국에 대한 누적 투자건수는 75,146건이었으며, 누적 투자금액은 457.6억 달러였다.

2) 郭曉文, “兩岸之間經貿仲裁的發展和前瞻”, 「仲裁與法律」, 第78期,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2002. 4, p. 32; 林俊益, 「國際商務仲裁淺釋」, 臺北: 永然文化, 1993. 10, p. 147; 陳煥文, 「國際仲裁法專論」, 臺北: 五南, 1994. 4, p. 347.

3) 郭曉文, 전제논문, pp. 32-33.

4) 양안(兩岸)이란 중국과 대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중국과 대만이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나타난 용어이다.

분 홍콩을 중계지로하여 이루어졌다.⁵⁾ 또한 대만 당국은 대만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간접투자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규정을 두었다.⁶⁾ 이에 따라서 많은 대만 기업들은 대만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홍콩과 같은 제3국을 경유하여 중국에 우회투자를 하고 있다. 이 결과 실질적으로 양안 간의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이 홍콩 또는 제3국에 등록된 기업들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러므로 실제 수리된 양안 간의 중재사건은 상술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⁷⁾

중국과 대만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중국과 대만 학자들에 의해 국내 논문집 등에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완근⁸⁾은 중국과 대만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과 관련된 법률을 소개하고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남한과 북한간 상사중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양숙⁹⁾은 중국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대만 법원의 집행 사례를 분석하였다. 곽효문(郭曉文)¹⁰⁾은 중국과 대만 간의 중재를 통한 상사분쟁 현황을 설명하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양안간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상사중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현수¹¹⁾는 중국과 홍콩이 홍콩반환 이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 규정에 합의하고, 이 합의내용을 각자의 국내법에 규정한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차경자¹²⁾는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하였다.

- 5) '삼통'(三通)이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通商), 통우(通郵), 통항(通航)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通商)은 중국과 대만이 제3국을 통한 간접무역이나 간접투자 방식이 아니라 직접무역 및 직접투자 방식을 통해 경제교류를 하는 것을 말하고, 통우(通郵)는 중국과 대만간 우편 왕래에 있어서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편이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통항(通航)은 중국과 대만간 직항로나 직해로를 개통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과 대만은 2008년 12월 15일을 기해 양국 항공간 직항해상노선, 양국 공항간 직항 항공노선, 그리고 우편물의 직접왕래 등을 포함하는 '대삼통'(大三通) 시대를 열었다.
- 6) 대만의 중국에 대한 투자 관련 법률은 순자산규모가 50억 대만위엔 이하인 기업은 순자산규모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으며, 순자산규모가 50억 대만위엔 이상 100억 대만위엔 이하인 기업은 순자산규모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순자산규모가 100억 대만위엔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규모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在大陸地區從事投資或技術合作許可辦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참조.
- 7) 黎曉光, "WTO與兩岸商事仲裁發展與前瞻", 「仲裁與法律」, 第83期,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2003. 1, p.9; 2006년 중국에 투자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중 대만의 비중은 3.4%이지만 버진아일랜드와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한 투자금액을 고려할 경우 그 비중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2006년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가운데 홍콩과 버진아일랜드의 비중은 각각 32.1%와 24.7%를 기록하였다. 조명철, 박현정, "중국-대만 양안 간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국토」, Vol. 311, 국토개발원, 2007, p. 50 참조.
- 8) 박완근, "중국대륙과 대만사이의 상사중재 현황과 전망-북한개성공단의 상사분쟁해결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16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 12, pp. 85-104.
- 9) 이양숙, "CIETAC의 중재판정이 대만법원에서 승인 받은 사례", 「계간중재」, 제325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 pp. 51-56 참조.
- 10) 郭曉文, 전개논문, pp. 31-36.
- 11) 하현수, 윤충원, 구양준, "중국 내륙과 홍콩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8. 11, pp. 381-404.
- 12)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 8, pp. 263-292.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대만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과 관련한 규정들을 일별하고, 노출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초기 단계인 남북한 간의 상사중재제도 구축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일정한 도움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대만의 중국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1. 대만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대만은 1958년 유엔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칭함) 제정시에 참여가 요청되었으나, 이 시기 대만에는 중재와 관련된 법률이 전혀 없었으므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1961년 1월 20일 대만은 ‘상무중재조례’(商務仲裁條例)를 제정 공포하였다.¹³⁾ 1998년 6월 24일 대만은 ‘상무중재조례’를 수정·보완하여 총 56개조로 구성된 중재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대만은 2002년 7월 10일 중재법 제8조, 제54조 그리고 제56조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만 중재법 제47조 제1항은 대만의 영토 밖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및 대만의 영토 내에서 외국법률에 준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은 외국의 중재판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 즉 대만은 중재판정의 국적 결정기준으로 영토적 척도와 절차법적 척도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¹⁵⁾ 또한 동 법 제47조 제2항은 외국중재판정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재정을 득하게 되면 집행명의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는 대만 중재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첫째, 중재판정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정된 사본, 둘째, 중재합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정된 사본, 셋째, 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 중재법규,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또는 국제기구의 중재규칙의 전문(全文), 그리고 전항의 서류가

13) 최장호, “한국과 대만의 중재법개정에 대한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 11, p. 113.

14)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된 ‘외국법률’은 외국 중재법규,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그리고 ICC와 같은 국제기구의 중재규칙을 포함한다. 林俊益, 「仲裁法之實用權益」, 臺北: 永然文化, 2001. 4, pp. 360-361 참조.

15) 陳希佳, 「論海峽兩岸關於仲裁裁決之撤銷, 承認與執行-兼論兩岸相互間仲裁裁決之認可」, 北京大學 博士論文, 2001. 5, p. 91; 林俊益, 전계서, p. 359; 뉴욕협약 제1조 제1항 전문에 “이 협약은 승인과 집행청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영토적 척도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같은 항 후문에 “이 협약은 승인 또는 집행청구를 받은 국가에서 국내판정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중재판정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체상 중재판정은 그것이 내려진 영역이 속한 국가가 제1차적 국적국이 되고, 또한 그 절차법을 가진 국가가 제2차적 국적국이 될 것이다.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01. 1, p. 201 참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승인 및 집행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중 사본은 대만 대사관, 대표처, 사무소 또는 대만 정부로부터 수권된 기관으로부터 증명되어야 한다.¹⁶⁾

한편 대만 중재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와 관련하여 중재법 제49조에서 집행법원이 피고의 주장과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직권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대만 중재법 제49조는 첫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대만의 공공질서 또는 선량풍속을 위반하는 경우, 둘째, 중재판정의 대상이 대만의 법률에 의거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인 경우, 셋째, 중재판정의 관정지국 또는 중재판정에 적용된 중재법규의 소속국이 대만의 중재판정에 대해 집행을 거부한 경우에 동 국가들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협약 제5조 제2항은 중재 집행국 기준으로 중재가능성이 없는 중재판정 그리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집행국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 그러나 대만 중재법은 상호보증원칙¹⁸⁾을 적용하여 상대국이 대만 중재판정의 집행을 승인해야만 대만도 상대국의 중재판정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⁹⁾ 이와 관련된 사례로, 1975년 대만고등법원 대중분원은 영국 법원이 대만의 민사확정판결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였다.²⁰⁾ 그러나 동 판결은 상호보증원칙을 잘못 적용한 판결로 이후 대만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²¹⁾ 대만은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하여 국제조약 및 쌍무조약 등을 거의 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중재 분야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를 낳고 있음에 따라,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극단적인 상호보증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게 된다면, 상대국 또한 대만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을 상호보증원칙에 따라 거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²²⁾

한편 대만 중재법 제50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와 관련하여 집행피신청인이 주

16) 대만 중재법은 뉴욕협약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및 집행 신청서류에 추가하여 중재판정의 준거법 조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협약 제4조 “1. …(a) 정당하게 인증된 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사본, (b)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사본. 2. 전기의 판정 또는 합의가 그 판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17)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그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a)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른 중재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또는 (b)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그 국가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18) 상호보증원칙에 대해 목영준은 “판결 또는 중재판정을 내린 외국의 상호보증에 있다는 것은, 그 외국이 구체적으로 우리 판결을 승인한 상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법령, 판례, 관례 등 판결국의 법체계에 비추어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목영준, 전계서, p. 265.

19) 劉錢錚, 陳榮傳, 「國際私法論」, 臺北: 三民書局, 1998. 8, p. 741.

20) 林俊益, 「國際商務仲裁(二)裁判集」, 臺北: 長弘出版社, 1990, p. 315; 薛西全, 「兩岸仲裁制度比較研究」, 中國政法大學 博士論文, 2004. 5, p. 131.

21) 林俊益, 전계서, 1993. 10, p. 141.

22) 林俊益, 「國際商務仲裁(一)論文集」, 臺北: 長弘出版社, 1990, pp. 49-50.

장·입증하여야 하는 집행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재법 제50조의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는 뉴욕협약 제5조 제1항²³⁾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와 동일하다.²⁴⁾

2. 대만의 중국 및 홍콩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대만은 중국과의 상사중재와 관련한 전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992년 7월 31일 공포한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이하 ‘양안관계조례’라 칭함)에서 두 지역의 중재판정 상호집행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²⁵⁾ 즉, ‘양안관계조례’ 제74조는 중국에서 내려진 민사확정판결, 민사중재판정이 대만의 공공질서 또는 선량풍속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 법원의 승인을 받은 판결 및 중재판정은 집행명의를 얻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는 중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대만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²⁶⁾ 그러나 대만은 1997년 5월 14일 ‘양안관계조례’ 제74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상기 두 조항은 대만에서 내려진 민사확정판결 및 민사중재판정이 중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대만은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대하여 상호대등조건에 입각하여 중국의 중재판정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을 추가한 것이다.²⁷⁾

‘양안관계조례’의 규정으로만 보면, 대만은 중국의 중재판정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양안관계조례’가 대륙 중재판정의 대만에서의 승인 및 집행의 길을 열어 놓고는 있지만, 대만과 관련하여 중국 중재기관에 중재신청된 사건들은 대부분 중국에 대한 대만 투자자와 관련된 사건들로서 대만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 간에 ‘삼통’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중재사건 당사자가 대만에 입국하는 것은

23) 뉴욕협약 제5조 제1항은 중재판정 거부사유로 첫째, 행위능력의 결여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둘째, 방어권의 침해, 셋째, 중재인의 권한유월, 넷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하자, 다섯째,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또는 취소·정지된 중재판정을 규정하고 있다.

24) 胡偽良, 「兩岸仲裁法之修法建議以兩岸、香港、新加坡之比較研究為基礎」, 中國政法大學 博士論文, 2006. 3, p. 166.

25)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직접무역 대신 홍콩과 같은 제3국을 통한 중국과의 간접무역을 허용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대중국 수입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양국이 모두 WTO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중국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대중경제협력에 대한 대만 정부의 규제는 주로 대만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인 긴장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만 정부는 상기의 원인 등으로 인하여 상사중재에 있어서도 중국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조명철, 박현정, 전계논문, pp. 47-48 참조.

26) 樊清華, 吳萍, 「兩岸商事仲裁比較論議」, 「商場現代化」, 第486期, 中國科學技術信息研究所, 2006. 11, p. 276.

27) 林一飛, 「中國國際商事仲裁裁決的執行」, 北京: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6. 12, p. 233; 劉想樹, 「中國涉外仲裁裁決制度與學理研究」, 北京: 法律出版社, 2001, p. 247.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대만에서의 중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²⁸⁾

대만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에는 홍콩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른 복잡한 법률적용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대만과 홍콩 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은 1997년 3월 18일 ‘홍콩·마카오 관계조례’(香港澳門關係條例)를 공포하였다. 동 조례 제42조 제2항은 중재판정의 상호집행과 관련하여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내려진 민사중재판정은 ‘상무중재조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홍콩 및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된 이후 대만 법원은 두 지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대만에서의 승인 및 집행 신청에 대해 ‘홍콩·마카오 관계조례’를 준거하여 판결을 내렸다.³⁰⁾

Ⅲ. 중국의 대만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1.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중국은 1987년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4년 중재법 제정시 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모범법을 대부분 수용하여 중재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결과 중국의 중재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와 거의 유사하다.³¹⁾

중국 중재법은 중재를 국내중재와 외국중재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국중재는 섭외요소의 포함여부에 따라 내국중재와 섭외중재로 구분하고 있다.³²⁾ 이들 내국중재, 섭외중재, 외국중재는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 법원이 섭외중

28) 杜煥芳, 「臺灣地區與大陸區際司法協助問題述評」, 「法令月刊」, 2004年 5期, 學林出版社, 2004, p. 43.

29) 대만은 1998년 기존 ‘상무중재조례’를 수정·보완하여 ‘중재법’을 제정하였으나, ‘홍콩·마카오 관계조례’ 제42조의 홍콩 및 마카오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준거법을 대만 중재법으로 수정하지 않고 있다.

30) 臺灣臺南地方法院八十七年度仲聲字第八三號裁定, 臺灣臺北地方法院八十七年度仲聲字第四號裁定, 臺灣臺中地方法院八十七年度仲聲字第二號裁定 등의 사건에서 대만 법원은 ‘홍콩·마카오 관계조례’를 적용하여 집행판결을 내렸다. 林俊益, 전계서, 2001. 4, p. 388 참조.

31) 韓健, 「現代國際商事仲裁法的理論與實踐」, 北京: 法律出版社, 2000, p. 371.

32) 중국의 ‘민사소송법 활용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304조는 섭외중재와 국내중재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및 조직인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민사법률 관계의 성립, 변경, 중지의 법률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소송의 목적물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섭외민사사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섭외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비록 어(魚)모씨가 중국여권을 소지하고는 있지만 주로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제일동포이므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본 사건을 섭외중재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하현수, 윤충원, “중국의 국제상사중재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9, p. 140 참조.

재판정의 취소 및 집행거부 관련하여 적용하는 법률은 중국 중재법 제70조³³⁾와 제71조³⁴⁾의 규정이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섭외중재판정 취소 및 집행거부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60조³⁵⁾에 따르고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69조³⁶⁾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중국 법원은 뉴욕협약 체결국의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의 심사하는 뉴욕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둘째, 중국 법원은 뉴욕협약 비체약국의 중재기관에서 내린 중재판정은 민사소송법 제269조의 호혜원칙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중국의 무역 상대국들 대부분은 뉴욕협약 체결국이기 때문에, 중국 법원이 호혜원칙을 근거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심사한 경우는 거의 없다.³⁷⁾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하급 법원이 외국중재판정 및 섭외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및 집행거부 판결을 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28일 ‘인민법원의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 사항 처리에 관한 관련문제의 통지’³⁸⁾(關於人民法院處理與涉外仲裁及外國仲裁事項有關問題的通知)를 공포하였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상기의 통지에서 인민법원이 섭외중재판정의 취소, 섭외중재판정의 집행거부,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급 법원의 특별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전보고제도를 확립하였다. 즉 하급 법원이 섭외중재판정의 취소, 섭외중재판정의 집행거부,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최고인민법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은 하급 법원이 사전보고제도를 위반한 경우에 직권으로 집행거부 판결을 철회할 수 있으며 재심을 명하거나 직접 분쟁을 심사할 수 있다.³⁹⁾

33) 중국 중재법 제70조 “신청인이 대외 중재 판정이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 당해 사실을 심사한 후 판정을 취소한다.”

34) 중국 중재법 제71조 “피신청인이 대외중재판정이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 당해 사실을 심사하고 집행거부를 결정한다.”

35) 중국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인이 중국 중재기관의 판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사실여부를 심사하고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조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서면 중재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2) 피신청인이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규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판정의 내용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집행거부를 재정한다.”

36) 중국 민사소송법 제269조 “국의중재기관의 판정은 중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여야 하며, 응당 당사자가 직접 피집행인 주소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법원은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7) 하현수, 윤충원, 상계논문, p. 142; 차경자, 전계논문, pp. 270-271.

38)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우리나라 섭외중재기관의 판정을 집행신청 하는 경우, 또는 인민법원에 외국중재기관의 판정을 승인 및 집행 신청하는 경우에, ……집행의 거부 또는 승인 및 집행의 거부 판결을 하기 전에 필히 관할 고급인민법원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고급인민법원이 집행의 거부 또는 승인 및 집행의 거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을 받은 이후 판정의 집행거부 또는 승인 및 집행거부가 가능하다.”

39) 하현수, 윤충원, 전계논문, p. 141

2. 중국의 대만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1) 대만 기업의 중국내 지위

중국은 1978년 덩소평(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 이전까지만 해도 대만과 어떠한 정식적인 경제교류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대만, 홍콩, 그리고 마카오로부터의 투자 및 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투자자 및 수출입상에 대한 명확한 지위 보장이 요구되었다.⁴⁰⁾ 이를 위하여 중국 국무원은 1980년 ‘대만동포의 투자 촉진에 관한 국무원 규정’(國務院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規定)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중국 국무원은 유사한 내용을 1986년 10월 11일 공포한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에 관한 국무원 규정’(國務院關於鼓勵外商投資的規定)에 재규정하였다. 동 규정 제20조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공사, 기업 그리고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투자자는 외국기업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¹⁾

한편 중국은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합자투자(合資投資)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중외합자법(中外合資法) 제40조에서 “합자 쌍방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협상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낸다. 만약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의 중재기관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거나 쌍방 간에 합의한 중재기관을 통해 중재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섭외경제법 제37조에서도 계약 쌍방은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국의 중재기관 또는 기타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중외합자법과 섭외경제법은 모든 외국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중국 국무원이 상기 규정들에서와 같이 대만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신분을 인정함에 따라, 대만 기업들도 중국 기업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재를 통하여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⁴²⁾ 그러나 상기 관련 법규들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다. 즉, 비록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규정한 법규들이 대만 기업과 중국 기업 간에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중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⁴³⁾

40)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초기 상대적으로 투자유치가 용이한 해외 화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화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용이한 선전, 주하이, 산토우, 씨야먼 등의 중국 동남부 지역을 최초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개방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화교기업을 포함한 외국인의 중국내 투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41) 康明, “涉臺經貿糾紛的仲裁解決”, 「仲裁與法律」, 第84期,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2003. 4, p. 44.

42) 趙健, 「國際商事仲裁的司法監督」, 北京: 法律出版社, 2000. 1, p. 227.

43) 王利明, “海峽兩岸仲裁立法的比較研究”, 「法學評論」, 2004年 第1期(總第123期), 武漢大學, 2004, pp. 49-50.

(2) 대만관련 분쟁의 중재관할권

1988년 7월 3일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대만동포의 투자 촉진에 관한 규정’(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規定)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중재관할권과 관련하여, 제20조는 “대륙에 투자한 대만 투자자의 계약 이행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분쟁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당사자가 조정 또는 화해를 원하지 않거나 협상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중재조항 또는 분쟁 발생 후 서면 중재합의에 따라 대륙 또는 홍콩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동 규정은 중국에 대한 대만 기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중재관할권을 중국 및 홍콩 지역으로 국한하고, 대만에서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았다.⁴⁴⁾

1994년 3월 5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臺灣同胞投資保護法)(이하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이라 칭함)을 공포하였다. 동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가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중재조항 또는 분쟁 발생 후 서면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동 법은 ‘대만동포의 투자 촉진에 관한 규정’과 달리 중재기관 소재지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즉, 동 법은 중재는 대만의 중재기관을 포함한 모든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1999년 12월 5일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실행 세칙’(中華人民共和國臺灣同胞投資保護法實施細則)(이하 ‘실행세칙’이라 칭함) 제29조 제2항은 “당사자가 협상 또는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중재조항 또는 분쟁 발생 후 서면 중재합의에 따라 중국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대륙의 중재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만동포를 중재인으로 초빙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대만동포투자보호법’과 상이한 규정을 두었다.⁴⁶⁾ 즉, ‘실행세칙’은 ‘대만동포투자보호법’에 제한조건을 추가하여 중국내 대만 기업의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외국중재의 관할권을 배제하였다. ‘실행세칙’은 분쟁의 중재관할권을 갖는 중재기관은 필히 중국의 중재기관으로 한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국의 중재기관이란 중국,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의 중재기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⁷⁾

(3) 대만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대만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중국의 최초 규정은 최고인민법원이 1998년 1월 15일 공포한 ‘대만의 관련 법원에서 내린 민사판결의 승인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44) 趙秀文, 「國際商事仲裁及其適用法律問題」,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p. 301.

45) 郭曉文, 「WTO與商事仲裁發展和前瞻」, 仲裁與法律, 第83期,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2003. 1, p. 10.

46)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는 4명의 대만인을 중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푸젠성, 광둥성 등의 중재기관들도 대만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였다. 王利明, 전계논문, p. 50 참조.

47) 林一飛, 전계서, pp. 232-233.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人民法院認可中國臺灣地區有關法院民事判決的規定)(이하 '대만민사판결규정'이라 칭함)이다. '대만민사판결규정' 제19조는 “대만지구 민사판결 및 대만지구 중재기관 중재판정의 승인 신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승인된 대만지구의 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만의 중재기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중국의 관할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 규정은 대만의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와 관련하여 제9조 제2항, 제5항 그리고 제6항⁴⁸⁾에서 집행거부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법원은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집행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만의 중재판정을 집행거부할 수 있다.⁴⁹⁾

다만 '대만민사판결규정'은 중국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대만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여부를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 법원은 대만의 중재기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국내중재판정으로 간주하여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⁵⁰⁾ 국외중재판정 또는 섭외중재판정으로 간주하여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 및 개인을 외국기업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 기업과 중국 기업 간에 발생한 상사분쟁을 대만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내리는 경우, 동 중재판정은 중국 법원에서부터 국외중재판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⁵¹⁾ 대만의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절차만을 심사하였을 뿐 판정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⁵²⁾ 즉, 중국 법원은 대만의 중재기관이 내린

48) 중국 인민법원의 다음의 경우에 대만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대만민사판결규정' 제9조 제2항 “피신청인이 중재절차 진행 통지를 받지 못해 중재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그리고 중재행위능력이 없는 피신청인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제5항 “인민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건, 외국, 경외(境外) 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건, 또는 경외의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이 이미 인민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제6항 “인가 신청된 중재판정이 국가 법률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거나, 사회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

49) 黃良友, “海峽兩岸仲裁裁決制度比較研究”, 「比較與借鑑」, 仲裁研究第2輯, 2004. 12, p. 45.

50) 중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국내중재판정의 집행거부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인민법원은 피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합의부를 구성하여 사실여부를 심사하고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조항 또는 분쟁발생 이후 서면중재합의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2) 판정의 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한이 없을 경우,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규칙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4) 사실의 주요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5) 법률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6) 중재인이 해당 사건을 중재함에 있어 뇌물수수, 부정해위, 법을 어기고 판정한 행위가 존재할 경우. 인민법원이 해당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을 거부한다.”

51) 閻曼, 司雷, “境外民商事裁判文書如何在大陸獲得承認和執行”, 「移居上海」, 第11期, 移居上海雜誌, 2002. 11, p. 43.

52) 2004년 3월 5일 신청인 화화(해외)치지유한공사(和話(海外)置地有限公司: 이하 '화화공사'라 칭함)는 푸젠성 씨아먼시 중급인민법원에 대만의 중화중재협회(中華仲裁協會)가 내린 화화(해외)치지유한공사와 개가(하문) 콜프를립유한공사(이하 '개가공사'라 칭함) 간의 채권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동 중재판정의 내용은 개가공사는 화화공사에 390만 달러를 손해 배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중국 푸젠성 씨아먼시 중급인민법원은 심사후 대만의 중화중재협회가 2003년 11월 4일 내린 중재판정은 '대만의 관련 법원에

중재판정을 섭외중재판정으로 간주하고 중재판정을 심사한 것이다.

IV. 중국과 대만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국은 대만에 비해 양안간 상사중재와 관련한 국내법 제정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양안간 중재판정 상호집행과 관련된 규정의 상호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 문제점

(1) 상대방 법률의 적용

중국 법률은 대만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법해석도 내놓지 않고 있다.⁵³⁾ 중국의 중재기관이 대만 기업 관련 투자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만 법률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점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투자유치국의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 법률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예를 들어 대만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 우선 투자주체의 자격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의 ‘대만동포투자보호법’ 제2조 제2항은 “본 법에서 말하는 대만동포투자는 대만지구의 공사(公司),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자로서 기타 성, 자치구 및 직할시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공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은 대만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 중국의 중재기관은 중재절차중 계약 당사자의 자격 또는 행위능력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만의 법률을 필연적으로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 밖에 ‘실행세칙’ 제5조는 “중화인민공화국대만동포투자보호법과 본 ‘실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섭외경제법률, 행정법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중재기관은 ‘민사통칙’(民事通則)의 섭외민사법률 적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민사통칙의 섭외민사법률 적용원칙은 ‘불법행위지법률 적용원칙’, ‘부동산소재지법률 적용원칙’, 그리고 ‘최고밀접관계원칙’ 등이 있다.⁵⁴⁾ 이에 따라서 중국의 중재기관은 대만의 법률을 적용해야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서 내린 민사판결의 인민법원의 승인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동 중재판정의 집행을 승인한다고 판결하였다. 福建星廈門市中級人民法院 (2004) 廈民認字第20號民事裁定書 참조.

53) 林一飛, 전계서, p. 233.

54) 중국 민사통칙 제8장(섭외민사관련 법률적용)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참조.

55) 林一飛, 전계서, pp. 233-234.

대만의 ‘양안관계조례’는 대만과 중국간 민사사건과 관련한 법률적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에 규정된 법률적용원칙은 중국의 민법통칙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동 조례는 일부 상황에 대하여 대만의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69조에서 대만에서의 부동산 취득, 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대만의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례는 중국 개인 및 법인의 대만 내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즉, 동 조례 제70조는 중국 법인의 대만에서의 법률행위 금지, 제71조의 연대보증 금지, 그리고 제72조의 중국 국민의 대만 법인내 임원을 역임할 수 없다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규정들은 중국 법률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중국 중재판정의 승인 범위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상기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대만 법원은 대만의 공공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⁵⁶⁾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 규정상으로는 보편, 중국의 중재기관은 대만 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전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통칙에 규정된涉外민사법률 적용원칙에 따라 대만의 법률을 적용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의 중재기관도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조건 및 금지조건은 있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양안관계조례’에 규정된 중국법률 적용원칙에 따라 중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양 국가 모두 상대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중재판정을 내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⁵⁷⁾ 또한 양 국가 간에 존재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대국 중재기관이涉外민사법률 적용원칙에 따라 법률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쉽게 예측하기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2) 상호집행 법률의 불확실성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대만은 상대국 중재기관에서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자국내 승인 및 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중국 법원이 대만의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의 중국에서의 집행신청에 대해 승인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⁵⁸⁾ 또한 대만 법원이 중국의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의 대만에서의 집행신청에 대해 승인한 사례도 2~3건에 불과하다.⁵⁹⁾ 이처럼 양 국가 간에 중재판정의 상호집행 승인과 관련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집행지국이 아닌 피집행지국에서 중재를 진행한다는 것은 분쟁해결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양 국가 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논의의 사항으로

56) 상계서, p. 234.

57) 劉源, “兩岸仲裁法律制度比較研究”, 「政治與法律」, 2005年 第4期, 上海社會科學院法學研究所, 2005, p. 100.

58) 趙生祥, “海峽兩岸可仲裁事項比較研究”, 「現代法學」, 第29卷 第2期, 西南政法大學, 2007. 3, p. 155-156.

59) 이양숙, 전제논문, p. 56 참조.

하고 양국의 중재판정 상호집행과 관련된 규정들의 불확실성 및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법원은 대만에서 임의중재를 통해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을 승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대만민사판결규정’ 제19조는 대만의 중재기관을 통해 내려진 중재에 대해서만 승인 및 집행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과 달리 임의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인정하고 있다.⁶⁰⁾ 대만에서 임의중재를 통해 중재판정을 내린 경우에, 중국 법원은 ‘대만민사판결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임의중재를 통해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임의중재라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중국과 홍콩 간의 중재판정 상호집행을 위해 공포한 ‘내지(內地)와 홍콩특별행정구의 중재판정 상호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안배’⁶¹⁾(最高人民法院關與內地與香港特別行政區相互執行仲裁裁決的安排)(이하 ‘안배’라 칭함)에서도 임의중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외국중재 및 중국내 특별행정구와의 법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만에서 내려진 임의중재판정도 임의중재를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의 대만 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의 불명확성이다. ‘대만민사판결규정’은 대만의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중국의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9조는 대만 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로 행위능력의 결여, 방어권의 침해,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및 소송을 통해 해결된 사건, 그리고 공공질서위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로 중재합의의 무효, 방어권의 침해,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하자, 중재인의 권한유월, 그리고 공공질서위반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 두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집행거부사유 중 방어권의 침해와 공공질서위반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의 집행거부사유는 모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중국 법원이 대만의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심사할 때, 민사소송법을 적용하여 집행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대만민사판결규정’을 적용하여 집행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이한

60) 중국 중재법은 임의중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중국 중재법 제16조와 제18조는 중재기관의 약정 및 약정의 명확성을 중재합의 유효성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중재법 제16조 “중재합의는 계약에서 약정한 중재조항과 기타 서면으로 분쟁 발생 전 또는 분쟁 발생 후 중재를 청구하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포함한다. 중재합의는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중재 청구의 의사표시 2) 중재 사항 3) 선정된 중재위원회”. 제18조 “중재합의가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 당사자는 보충합의를 할 수 있다. 보충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하현수, 윤충원, 구양준, 전계논문, p. 398 참고.

61)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홍콩특별행정구의 대표는 중국 내륙과 홍콩 간의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을 위한 합의에 서명한 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999년 6월 21일 ‘안배’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홍콩의 입법회는 2000년 기준 ‘중재조례’에 제ⅢA부를 추가하여 중국 중재판정의 강제집행과 관련된 전문규정을 두었다. ‘안배’는 중재관할권 관련 규정,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요구시 필요 서류, 중재판정 집행신청의 유효기간, 중재판정 집행절차, 중재판정 집행의 거절사유, 그리고 구제조치 등을 총 11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하현수, 윤충원, 구양준, 상계논문, p. 389 참고.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규정상에 있는 집행거부 사유를 통합시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규정상에 열거되어 있는 집행거부 사유는 뉴욕협약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거부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두 규정의 집행거부사유를 통합하더라도 과도한 거부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대만의 ‘양안관계조례’는 상호보증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양안관계조례’는 중국 법원이 대만에서 내린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승인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국에서 내린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만 법원은 중국 법원이 대만에서 내린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비록 대만은 중재법 제49조에서도 법원 직권에 의한 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로 상호보증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상대국이 구체적으로 대만의 중재판정을 승인한 사례가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법체계에 비추어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양안관계조례’상의 상호보증원칙도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되는 상호보증원칙에 부합하도록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중재관할권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실행세칙’은 중국과 대만 간에 발생한 투자분쟁에 대한 중재관할권을 중국,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의 중재기관에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과 대만간 투자분쟁을 위의 중재기관들이 아닌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속한 중재기관이 중재판정을 내렸다면, 중국의 ‘실행세칙’에 따라 중재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중국이 이처럼 중재기관의 소재지를 제한하는 것은 중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중재판정의 국적을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지국이 국적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 분쟁대상의 성격, 절차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재판정의 국적을 결정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이 중국의 영토 밖에서 내려졌더라도 중국의 절차법 등을 따랐다면 중국의 중재판정이 되고, 중재판정이 중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졌더라도 다른 국가의 절차법 등을 따랐다면 외국중재판정이 된다는 것이다.⁶²⁾ 중국의 대만과의 투자분쟁에 대한 중재관할권 제한은 중국의 법규정뿐만 아니라 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과도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과 대만 간에 발생한 투자분쟁에 대하여 중국이 주장하는 영토 내의 중재기관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중재관할권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62) 목영준, 전제서, p. 201 참조.

2. 개선방안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대만 모두는 상대방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상호집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중국에 대한 대만의 직접투자는 대부분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같은 제3국의 기업 명의로 중국에 투자되기 때문에, 상사중재사건이 발생하면 동 사건은 중국과 제3국 간에 체결되거나 가입한 특정 규정에 의해 중재판정 상호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대만 기업의 명의로 중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중재사건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만관련 중재규정이 적용되나,⁶³⁾ 실제 동 법규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는 몇 건 되지 않는다. 한편 대만의 경우에도 중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만의 관련 법률을 적용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대만 간의 화해무드에 따른 ‘삼통’ 문제의 해결은 양국 간의 직접적인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상대방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상호집행 문제는 과거와 달리 더욱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과 대만 간에 중재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의견들을 제시해 보고 필자가 판단하는 양안간의 최선의 중재판정 상호집행제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중국과 대만의 중재관련 전문가들은 양 국가간 상사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양 국가의 정치적 대립은 상사중재 활성화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양 국가 간의 상사중재 활성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⁴⁾ 첫째, 중국과 대만 간의 연합조정기관의 설립하는 방법이다.⁶⁵⁾ 둘째, 중국과 대만의 중재기관이 상호 상대방 중재기관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⁶⁶⁾ 셋째, 홍콩의 중재기관을 통한 중국과 대만 간의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⁶⁷⁾ 그러

63) 대만 정부는 대만 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張斌生, 「仲裁法新論」, 北京: 廈門大學出版社, 2005. 7, p. 526.

64) 중국과 대만 간의 상사중재 활성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 내용은 林一飛 전게서, pp. 235-236 참조하여 정리함.

65) 연합조정기관의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1991년 초 민간기구인 중국의 ‘해협양안경무협조회’(海峽兩岸經貿協調會)와 대만의 ‘해협양안상무협조회’(海峽兩岸商務協調會) 간의 회의에서 제시되었다. 양 국가는 동 회의를 통해 1991년 3월 ‘해협양안경무협조회와 해협양안상무협조회 간의 조정규칙’(海峽兩岸經貿協調會與海峽兩岸商務協調會調解規則)을 체결하였다. 동 규칙에 따르면 양 국가는 각자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각자 조정위원 명부를 확정 후 이를 합하여 연합조정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 규칙은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다.

66) 상대국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이미 양 국가 간에 몇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양 국가의 중재기관이 상대방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를 진행함으로써, 상사중재판정의 신뢰성을 일정 수준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양 국가간 중재판정의 상호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적 장애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67) 홍콩의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방법은 홍콩의 중재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 방법의 법률적 근거는 홍콩과 중국 간은 중국의 ‘안배’ 그리고 홍콩과 대만 간은 대만의 ‘홍콩·마카오 관계조례’이다. 즉 ‘안배’는 중국과 홍콩의 상사중재를 상호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홍콩·마카오 관계조례’는 대만과 홍콩의 상사중재를 상호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콩의 중재기관을 통해 중재를 하게 되면 중국과 대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합리적인 면은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당사자가 중재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는 중재의 신속성 및 경제성이다. 그러나 홍콩 중재기관

나 이상의 방법들은 구속력이 없는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점,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방법이라는 점, 그리고 홍콩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현실화 시키는데 한계점이 있다.

현재와 같이 중국과 대만 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국가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중국과 홍콩 간에 합의에 따라 중국의 ‘안배’⁶⁸⁾와 홍콩의 ‘중재조례’ 제ⅢA부와 같은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즉, ‘안배’는 홍콩에서 홍콩의 ‘중재조례’에 근거하여 내린 중재판정이 ‘안배’에 규정된 집행거부사유가 없는 한 집행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⁹⁾ ‘안배’의 내용에 대한 중국과 홍콩 간의 합의과정을 참고하여 양안 간에 상사중재판정의 상호집행과 관련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이 합의 내용을 각 국의 중재관련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양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취하게 되면 양 국가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는 상대국을 국가로서 불인정하는 문제를 회피하면서 상대방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외국중재판정과 거의 동일하게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⁰⁾

V. 결 론

중국과 대만은 분단 59년 만인 2008년 12월 완전한 ‘삼통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양안

의 중재비는 중국과 대만의 중재기관의 중재비에 비해 훨씬 비싸다. 또한 홍콩의 중재인이 중국 및 대만의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홍콩의 중재기관을 통한 두 국가 간의 상사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보조적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68)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은 독립된 국가들과 같이 상이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재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양 지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상호간에 국내중재로도 그리고 국제중재로도 인정되지 않는 아주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양 지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시 적용해야할 규정을 각 지역의 국내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뉴욕협약으로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중국은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전세계에 홍콩이 중국영토의 일부임을 천명하였고, 한편 반환된 홍콩에 대해 주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경제·법률 제도를 반환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 지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대해 양 지역의 중재법 및 뉴욕협약 모두를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홍콩 정부와 합의를 통해 ‘안배’를 제정하여, 홍콩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시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안배’는 중국과 홍콩 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을 위한 법적 준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하현수, 윤충원, 구양준, 전개논문, p. 399 참고.

69) ‘안배’ 서문은 “……홍콩특구 법원은 내지 중재기관(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이 제공하여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발표한 명단)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에 따라 내린 중재판정의 집행에 동의하며, 내지 인민법원은 홍콩특구에서 홍콩특구 ‘중재조례’에 따라 내린 중재판정의 집행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배’ 제7조는 뉴욕협약 제5조의 집행거부사유와 동일한 집행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해 절차적 심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70) 중국과 홍콩 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현수, 윤충원, 구양준, 상계논문, pp. 381-404 참고.

간의 관계개선은 두 지역의 경제교류를 한층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삼통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향후 미칠 경제적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안 간 투자 및 무역의 증가는 이에 비례하게 분쟁을 증가시킬 것이다.

양안 당사자들 간의 경제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공권력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 당국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1980년대부터 양안 당사자들 간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인정하는 규정들을 공포하여, 양안 간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뉴욕협약을 준거하여 상대방에서 내린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대만은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의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양안의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인하여 각자 상대방이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중국과 대만의 상대방 중재판정에 대한 상호집행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대만은 상대방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해 제한조건을 두고 있다. 즉, 대만은 중국이 대만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이에 상응하게 중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영토 즉 중국, 대만, 홍콩, 그리고 마카오의 중재기관에서 내린 대만관련 중재판정에 대해서만 집행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제3국에서 내려진 대만관련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중재관할권을 매우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대만의 임의중재판정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국내중재에 대해 임의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법원은 대만의 중재판정 승인과 관련하여도 임의중재로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는 하나, 홍콩에서 내려진 임의중재에 의한 중재판정은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거부사유가 불명확하다. 중국은 대만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민사소송법상의 집행거부사유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법원이 집행거부사유를 어느 규정을 근거로 심사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이상에서 설명한 중재판정 상호집행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 양안 간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과 홍콩이 합의에 의해 규정한 ‘안배’와 ‘중재조례 제ⅢA부’와 같이 중국과 대만

도 상대방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이를 각각의 국내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면 중국과 대만의 기업들은 상호간 중재판정의 집행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재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국과 대만 간의 중재판정 상호집행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향후 한국과 북한 간의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구축에 일정한 도움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한과 북한이 처한 입장과 중국과 대만이 처한 입장 간에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안 간의 중재제도를 그대로 남북한 간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안 간의 중재관련 협력 및 규정제정 과정을 참고한다면 남북한 간의 중재제도를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01. 1.
- 박완근, “중국대륙과 대만사이의 상사중재 현황과 전망-북한개성공단의 상사분쟁해결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16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 12.
- 이양숙, “CIETAC의 중재판정이 대만법원에서 승인 받은 사례”, 「중재」, 제325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
- 조명철, 박현정, “중국-대만 양안 간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국토」, Vol. 311, 국토개발원, 2007.
-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 8.
- 최장호, “한국과 대만의 중재법개정에 대한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 11.
- 하현수, 윤충원, “중국의 국제상사중재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9.
- 하현수, 윤충원, 구양준, “중국 내륙과 홍콩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8. 11.
- 康明, “涉臺經貿糾紛的仲裁解決”, 「仲裁與法律」, 第84期,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2003. 4.
- 郭曉文, “兩岸之間經貿仲裁的發展和前瞻”, 「仲裁與法律」, 第78期,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2002. 4.

- _____, 「WTO與商事仲裁發展和前瞻」, 仲裁與法律, 第83期,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2003. 1.
- 杜煥芳, 「臺灣地區與大陸區際司法協助問題述評」, 「法令月刊」, 2004年 5期, 學林出版社, 2004.
- 黎曉光, 「WTO與兩岸商事仲裁發展與前瞻」, 「仲裁與法律」, 第83期,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2003. 1.
- 樊清華, 吳萍, 「兩岸商事仲裁比較芻議」, 「商場現代化」, 第486期, 中國科學技術信息研究所, 2006. 11.
- 薛西全, 「兩岸仲裁制度比較研究」, 中國政法大學 博士論文, 2004. 5.
- 閔曼, 司雷, 「境外民商事裁判文書如何在大陸獲得承認和執行」, 「移居上海」, 第11期, 移居上海雜誌, 2002. 11.
- 劉想樹, 「中國涉外仲裁裁決制度與學理研究」, 北京: 法律出版社, 2001.
- 趙生祥, 「海峽兩岸可仲裁事項比較研究」, 「現代法學」, 第29卷 第2期, 西南政法大學, 2007. 3.
- 劉源, 「兩岸仲裁法律制度比較研究」, 「政治與法律」, 2005年 第4期, 上海社會科學院法學研究所, 2005.
- 劉錢錚, 陳榮傳, 「國際私法論」, 臺北: 三民書局, 1998. 8.
- 王利明, 「海峽兩岸仲裁立法的比較研究」, 「法學評論」, 2004年 第1期(總第123期), 武漢大學, 2004.
- 林一飛, 「中國國際商事仲裁裁決的執行」, 北京: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6. 12.
- 林俊益, 「國際商務仲裁(一)論文集」, 臺北: 長弘出版社, 1990.
- _____, 「國際商務仲裁(二)裁判集」, 臺北: 長弘出版社, 1990.
- _____, 「國際商務仲裁淺釋」, 臺北: 永然文化, 1993. 10.
- _____, 「仲裁法之實用權益」, 臺北: 永然文化, 2001. 4.
- 張斌生, 「仲裁法新論」, 北京: 廈門大學出版社, 2005. 7.
- 趙健, 「國際商事仲裁的司法監督」, 北京: 法律出版社, 2000. 1.
- 趙秀文, 「國際商事仲裁及其適用法律問題」,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 陳煥文, 「國際仲裁法專論」, 臺北: 五南, 1994. 4.
- 陳希佳, 「論海峽兩岸關於仲裁裁決之撤銷, 承認與執行-兼論兩岸相互間仲裁裁決之認可」, 北京大學 博士論文, 2001. 5.
- 韓健, 「現代國際商事仲裁法的理論與實踐」, 北京: 法律出版社, 2000.
- 胡偽良, 「兩岸仲裁法之修法建議-以兩岸, 香港, 新加坡之比較研究為基礎」, 中國政法大學 博士論文, 2006. 3.
- 黃良友, 「海峽兩岸仲裁裁決制度比較研究」, 「比較與借鑑」, 仲裁研究第2輯, 2004. 12.

ABSTRACT

A Study on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between China and Taiwan

Hyun-Soo Ha

China and Taiwan had opened complete Three Linkages era in December 2008, in the 59 years. The improvement of two countries' relationship is expecting to spur two countries more on the economy exchange. However the increasement of investment and trade between two countries will increase disputes to ratio.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s related to economy between two countries, the most favorite way is to use arbitral system which involve less public power. After China and Taiwan recognized this point, they announced provisions which allow to solve controversies through the arbitration between parties of two countries since 1980, and prepared legal basis for dispute settlement between two countries. However, because China and Taiwan do not authorize each party as a country, the execution application made by each party based on New York Convention related to foreign arbitral awards cannot be approved. Because of these kind of reasons China and Taiwan should agree in order to guarantee mutual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which is an ultimate purpose of arbitration. However becau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of two countries there are provisions related to execution for arbitral awards decided by each party.

In this paper, I separated the provision related to mutual execution for arbitral awards of each party of China and Taiwan, examined exposed problems,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It can support some of assistance and implication to establish basis of arbitral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 to derive through this kind of study.

Key Words : Chinese Arbitral System, Taiwanese Arbitral System,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between China and Taiwan